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기관의 책무 규정 신설〉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2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 정책에 참여·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급기관으로 하여금 핵심자원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u>안정적인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이용·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안정적 확보를 위한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이용·판매 등</u> <u>과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1)는 “핵심자원”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

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²⁾,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핵심광물)³⁾,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⁴⁾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6호⁵⁾는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2. ~ 10. (생략)

2)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5호)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3)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5호) 별표 1

핵심광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리튬광, 니켈광, 코발트광, 망간광, 흑연, 희토류광[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터븀), 세륨, 란타넘(란탄), 이트륨, 스칸듐에 한함], 니오비움광(니오븀), 동광(구리), 보크사이트(알루미늄에 한함), 규석·규사(규소에 한함),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에 한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백금광(백금, 팔라듐, 루테튬, 로듐, 이리듐에 한함), 주석광, 티탄철광(티타늄에 한함), 텅스텐광, 안티몬광(안티모니), 창연광(비스무스), 크롬철광(크롬에 한함), 연광, 아연광, 탄탈륨광, 지르코늄광, 갈륨, 인듐, 셀레늄, 스트론튬

4)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5호) 별표 2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 및 그 하위 구성품목(웨이퍼, 금속화 페이스트)
- 태양광 설비의 모듈 및 그 하위 구성품목(EVA/POE, 저철분 유리, 백시트, 프레임)
- 풍력 설비의 너셀 및 그 하위 구성품목(기어박스, 발전기, 컨트롤러, 메인 샤프트, 요 베어링, 피치 베어링, 메인 베어링, 블레이드)
- 풍력 설비의 타워 및 그 하위 구성품목(후판, 플랜지)
- 풍력 설비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및 그 하위 구성품목(트랜지션피스, 후판, 강관)
- 풍력 설비의 해상풍력 전력 케이블 및 그 하위 구성품목(금속 합금 연선, 절연체, 보강체, 광케이블, 보호체)

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공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기관으로는 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공공공급기관과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천연가스 수출입업자, 연간 10만톤 이상의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자, 연간 100톤 이상의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국내 생산·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사업자 등 민간공급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현행법 제3조제3항은 이들 공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이용·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을 이와 같은 현행 공급기관의 책무에 명시함으로써, 공급기관으로 하여금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2조제2항⁶⁾은 공급기관으로 하여금 핵심자원을 개발·

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구매·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매·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급원의 다변화를 업무 수행 시 주요 고려 요소로 이미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행법에 따라 공급기관은 공급원의 다변화를 주요 자원안보 요소로 충분히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책무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8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구매·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